

의안번호	2211653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5.10.1.
추 계 번호	25C39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임신·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2. 종합상담기관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3. 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임신·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분석 5. 그 밖에 임신·출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재량규정
2	안 제7조의3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등)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4조의2 (건강보험의 적용)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함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현행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삭제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의2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의3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등)	
3	안 제14조의2 (건강보험의 적용)	

2. 상세 사유

가.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안 제7조의2)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규모, 사업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인구보건복지협회²⁾에서 운영하는 러브플랜³⁾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는데, 온라인, 전화(Tel 1644-7373) 및 SNS를 통해 의료(건강), 사회복지(정책), 정서지원(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예산사업으로 실시 중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중 내역사업인 “보호출산 정책 수행 경비” 사업(2025년 예산 3억 6,400만원)을 통하여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보호출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1) www.childcare.go.kr

2)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https://www.loveplan.kr/home/59.htm>

나.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등(안 제7조의3)

-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안 제7조의4)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 별도의 기관이 설치되거나 기존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상담기관 설치 여부, 확대되는 기존 사업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⁵⁾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보건소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기관 및 종합상담기관의 업무를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예산(2025년 기준 26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역상담지원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 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안 제7조의4(종합상담기관의 업무 등) ① 종합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2. 임신의 유지·중지에 대한 상담
 3.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4. 그 밖에 임신·출산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략>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건강보험의 적용(안 제14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⁶⁾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니나⁷⁾,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⁹⁾¹⁰⁾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지 급여의 범위, 인공임신중지 대상자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보험급여 범위, 방법, 절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6)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후략>
- 7)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 8) 건강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를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9)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 10) 2021~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함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